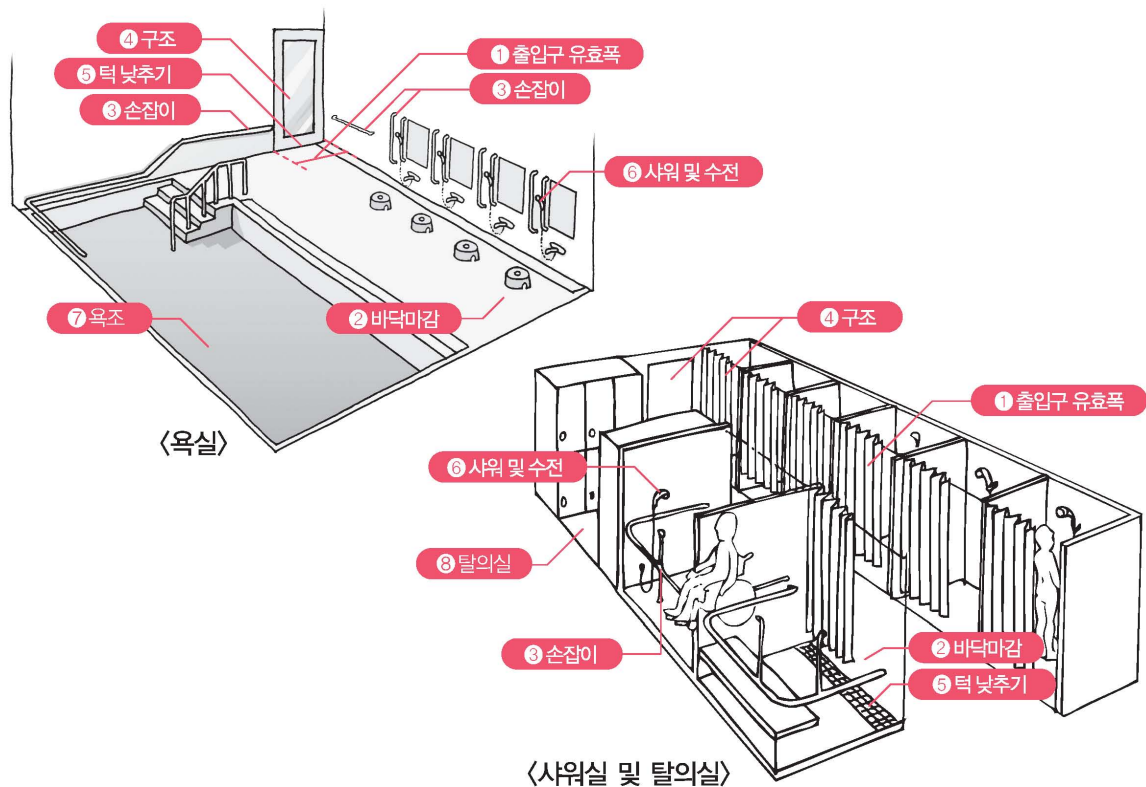


15.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, 샤워실 및 탈의실



■설치원칙

노인, 장애인은 욕실, 샤워실의 사용빈도 및 필요성이 훨씬 높다. 때문에 특별히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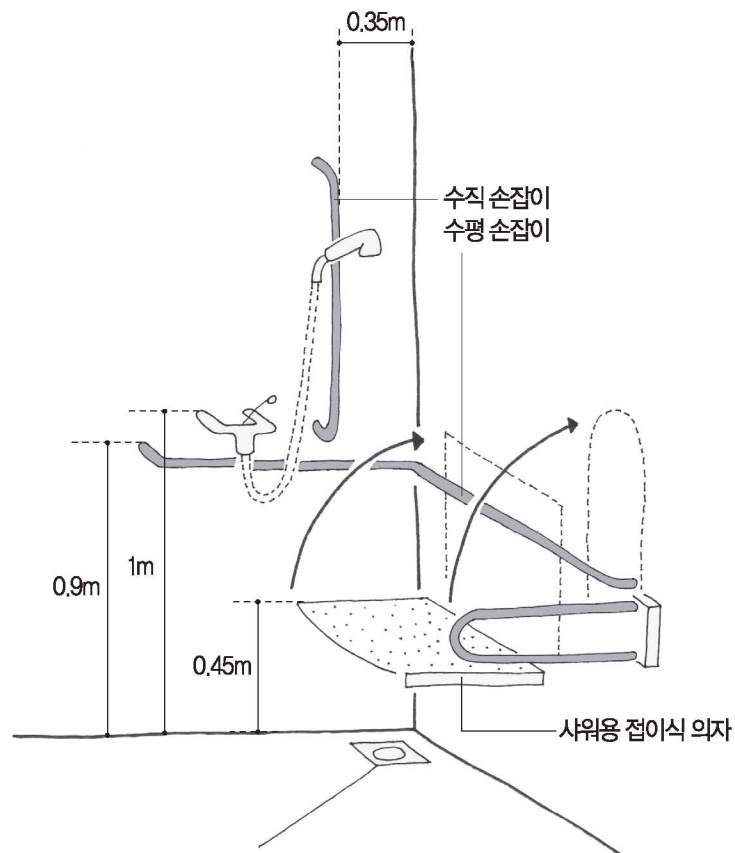
■설치요점

- 욕실, 샤워실 등은 노인, 임산부, 어린이, 장애인 등이 넘어질 위험이 매우 큰 곳이므로 이에 대한 배려가 특별히 필요하다.
- 탈의실, 샤워실이 층을 달리하여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- 1) 출입구 유효폭
 - 출입구의 통과 유효폭은 최소 0.8m 이상이다.
 - 수증기 등으로 시야가 흐린 점을 고려하여 출입구의 유효폭은 0.9m 이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.
 - 탈의실의 출입구 유효폭은 1.2m 이상 확보하는 것이 좋다.
- 2) 바닥마감
 - 바닥면의 기울기는 1/30 이하로 하여야 한다.
 - 욕실, 샤워실, 탈의실의 바닥마감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여야 한다.
 - 바닥 난방마감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. 이는 일정한 온도유지는 물론 미끄럼방지 등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.
- 3) 손잡이
 - 샤워기, 욕조 주변에 앉고, 서고, 걸을 때 잡을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하면 안전과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다.
- 4) 구조
 - 출입문은 노인, 휠체어 사용자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개폐가 용이한 구조로 되어야 한다.
 - 욕실 출입문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.
 - 샤워실의 유효바닥면적은 0.9m×0.9m 또는 0.75m×1.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- 5) 턱 낮추기
 - 시야가 흐리고 미끄러운 점 등을 고려하여 욕실 및 샤워실의 바닥면 높이는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6) 샤워 및 수전

- 노인, 어린이,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광감지식 · 누름버튼식 ·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.
- 자동온도조절 또는 냉 · 온수의 범위를 고정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.
- 샤워실에는 샤워용 접이식 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.4m~0.45m 이내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.



〈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〉

7) 욕조

-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상태로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.4m~0.45m 범위 내로 하여야 한다.
- 욕조 주위에는 수평 및 수직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.

8) 탈의실

-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.4m~1.2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,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